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
------	---

제출년월일 : 2002. 7. .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명칭변경 등 개정된 관
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 나. 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내용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함
 -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 “의료보호법시행령” ⇒ “의료급여법시행령”
 - “의료보호기금” ⇒ “의료급여기금”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보호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안 제7조제1항)
- 라.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의료급여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02. 6. 1. ~ 6. 22.)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 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서초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 28조제3항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기금이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기금이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제7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 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이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대불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이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 한다.) 	<p>〈삭제〉</p>
<p>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및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보고 등)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u></p>